

2024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4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02. 16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-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을 통하여 지역기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, 우수 영화인을 발굴·육성하여 제주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
2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(독립영화, 예술영화, 다큐멘터리영화 등) 제작비 지원
- 지원규모 : 6편 내외, 총지원금 1억 6천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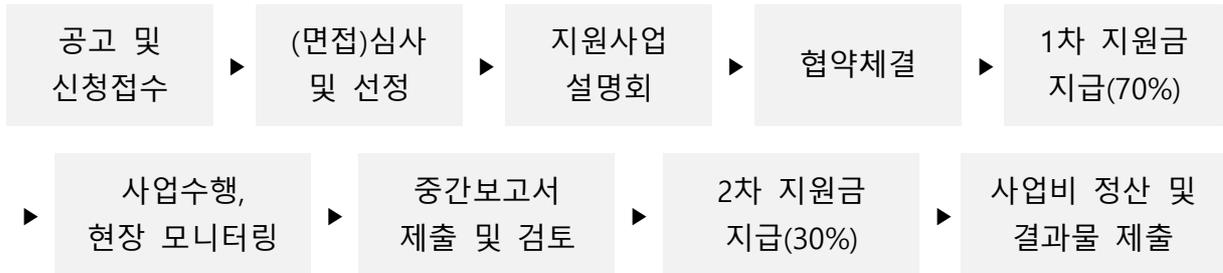
지원부문	편당 최대 지원금액	비고
장편지원	최대 1억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이상 장편영화
단편지원	최대 2천만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미만 단편영화
신규지원	최대 5백만 원 이내 차등지급	본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았던 단체 또는 개인 중 [신규지원]을 희망하는 자

※ 부문별 선정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(각 부문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 가능)

- 지원자격 :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
 -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(영화, 영상, 방송, 미디어 등) 제작 사업자
 -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록 두고 있는 감독(연출자)

- ※ 1인당 1편의 작품만 지원 가능함(중복접수 불가)
- ※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(미제출 시 자동으로 심사에서 제외)
- ※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도내에서 영화·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제작사 또는 감독에 대한 우대가점 적용(크레딧, 재직증명서 등 증빙)

○ 지원사업 일정



3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지원조건

- 최종 지원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
 - ※ 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 부담이며,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취소
- 협약기간(협약체결일 ~ 2024.12.12.)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, 사업 종료일(2024.12.30.)까지 완성본(가편집본) 제출

- ※ 완성본 제출기한은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 1회(최대 12개월 이내)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,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 (지원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)
- ※ 단, 당초 협약기간 내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 불가

-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외 개봉(방영),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내역 제출
-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실을 상영본(크레딧) 및 홍보물 등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
소정
양식

 제주특별자치도



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
JEJU CONTENTS AGENCY

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
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
○ **참여제한** (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)
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(과제 목표, 산출물 등)으로 제주특별자치도 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제작비 지원을 받은 경우

※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,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제작지원 사업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, 예산 중복 지출 및 증빙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진흥원 및 타 제작지원에도 통보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(사)에게 있음

- 신청일 기준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」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/환수금 등이 미완료/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영화인 신문고」 기준 스텝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, 의결한 작품
-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(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)

4 **지원신청**

○ **진행일정**

- 공고기간 : 2024.02.16.(금) ~ 03.11.(월)
- 접수기간 : 2024.03.04.(월) ~ 03.11.(월) 14:00까지, 8일간

※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flyjfly@ofjeju.kr)

- ※ 제출서류(양식)는 진흥원 누리집(<http://ofjeju.kr>) [공지사항] 또는 [사업신청] 참조
- ※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 (제주시 신산로82 제주 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영상산업팀)

○ 제출서류 : [별첨 1. 신청서류 체크리스트] 확인 후 작성

- 지원신청서(서명 또는 날인 필수)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제작비 예산계획서 1부
-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1부 (다큐멘터리의 경우 구성안 제출)
- 영화참여 크레딧 증명 등 도내 활동실적 증빙서류 ※ 해당자에 한함
- 기타서류 각 1부 (사업자등록증(주민등록등본),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, 심사위원 추천표, 체크리스트, 개인정보 동의서 등)

- ※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(사)에 있음
- ※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

○ 접수 및 문의

담당자	메일주소	확인 전화
영상산업팀 장수환 선임연구원	flyjfly@ofjeju.kr	064-735-0623

5 심사 및 선정

- 심사위원회 구성 : 각 분야(연출/제작/투자배급/평론/기타 등)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
- 심사일정 : 2024년 3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심사방법 (※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)

1차	2차	3차
제출서류 검토 ※ 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신청 취소될 수 있음	심사위원과 신청 단체(자)의 질의응답 (10분~15분 내외)	지원부문별 고득점순 지원작품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
○ 심사기준

심사기준	심사항목	배점
작품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• 작품(시놉시스 등)의 독창성 및 완성도 • 제주 소재 및 촬영지역 반영도 	40점
제작계획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작계획의 현실성 •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	20점
제작(수행)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이해도 및 실현 정도 • 제작사 및 제작인력 구성 및 역량 	20점
결과물 활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품 활용(배급 등)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• 마케팅 전략 및 수익화 방안 	20점
합 계		100점
우대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 입상 작품(3점) • 5년 이내 도내 영화·영상 관련 활동 경력(3점) • 진흥원 내 입주기업(2점) 	최대 5점

- ※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예산 한도 내 지원금액 산정
- ※ 모든 우대가점 사항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,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- ※ 선정작품의 지원 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

6 지원금 지급/집행/정산

※ 지원작품 선정 후 지원금 지급/집행/정산 관련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

○ 지원금 지급

① 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흥원-신청자(사) 간 협약체결
② 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서류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: 필요서류(신청서, (수정)사업계획서, 이행보증보험증권, 사업자등록증(신분증) 및 통장사본 등) 제출 시 지원금의 70% 지급 - 2차 : 과제수행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 여부 또는 재심사 대상 작품 결정 후 잔금(30%) 지급 ※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중간보고서 사전 제출

○ 지원금 집행

- 신청자(사)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사업비(지원금 + 자기부담금)를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- 집행기간은 협약서상 수행기간(협약체결일~2024.12.12.)으로 하며, 지출항목,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진흥원은 신청자(사)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신청자(사)는 성실히 응해야 함
- 순제작비(사전제작, 후반작업 비용 포함) 용도만으로 집행하여야 함

구분	집행 용도
인건비	•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작인력의 직접 인건비 ※ 신청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집행 불가(법인사업자 대표 집행 가능)
임차비	• 촬영장소 대관료(세트장, 외부 로케이션 등), 기자재(장비, 소품) 임차료
진행비	• 식대(부식비 포함), 교통비, (회계감사)수수료 등 제작 진행비 일체

※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%까지 집행 가능

- 인건비 집행 시 원천징수세 납부 및 2024년 최저시급 준수 의무

* 시급(1시간 기준) : 2024년 9,86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2,060,740원

- 원천징수세액, 4대 보험료 집행 가능(단, 고용주 부담금 제외)

※ 식대(부식비 포함)는 총사업비의 3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
※ 자산취득비(촬영장비 구입 등), 경상비(통신비, 임대료 등 운영경비) 등은 집행 불가

○ 지원금 정산

- 신청자(사)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정산범위 : 총사업비(지원금 + 자기부담금(지원금의 10% 이상))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 제출공문 및 결과보고서,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, 집행 증빙자료, 회계검증보고서*, 결과 영상물 등

※ 지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(사)는 결과보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법인(또는 개인회계사)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

-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,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, 진흥원은 해당 신청자(사)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7 기타사항

○ 결과물 귀속

-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사 또는 감독에 귀속되나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
 -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·오프라인 무료 사용(단, 사용 전 상호 협의 후 진행)
 - 진흥원 시설 운영(스튜디오, 영화관, 공연장 등),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 -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·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 -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
 - 신청자(사)가 제출한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(보도자료 등)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(사)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(이자 포함)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사업비를 영화 순제작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신청자(사)가 법령의 규정,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중간/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 결과가 미흡할 경우
 - 협약기간 내 제작을 중단·포기하거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결과 영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
-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시나리오 등이 사전 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
- 신청자(사)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
※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(사)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

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(과제가 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)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(사)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